

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 공고

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 지원하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9월 8일

산업기술통상자원부, 울산테크노파크원장

1. 지원개요

- **(사업명)** 전기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사업
- **(사업목적)** 소재·부품 실증화 지원으로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
- **(지원규모)** 직접지원
 - * 사전협의를 통해 울산TP 보유 장비 및 인프라로 지원 가능여부 검토 필요
- **(지원기간)** 2023. 10. ~ 2023. 11. (2개월내)

2. 지원대상(신청기업)

- 이차전지산업 전·후방 연관 소재·부품 분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
 - *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선정 가산점 부여 (관련 :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(기업 등의 유치지원))
 - * 입주예정기업은 지원기간이내 입주증빙자료 제출 필수
- 소재·부품의 실증화 및 사업화 추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

3. 세부 지원내용

- **(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)** 총 2개 4건

| 구분 | 프로그램 | 지원항목 | 비고 |
|------|---------|--|----|
| 기술지원 | 시제품 제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Lab scale 검증이 완료된 리튬이온이차전지관련 소재·부품 실증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* 4대 핵심소재 및 전지 부품 실증 * 리튬이온이차전지 한정 * 전극(양극, 음극)제조, 전지조립 가능 1. 전극제조 양극, 음극 각 1종 최대 2개 1-1. 1Ah급 파우치형 전지조립 50개 또는 1-2. 코인형(Half cell) 전지조립 10개 * 울산TP가 보유한 장비 수준에서 지원 가능 * 소형 시험평가인증과 연계지원 가능 - 전극제조, 전지조립, 시험평가인증 | 2건 |
| | 시험평가 인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형 리튬이온이차전지 시험평가 * 시제품제작과 연계지원 가능 * 충방전, 전기화학평가 1-1. 1Ah급 파우치형 10개 또는 1-2. 코인형(Half cell) 10개 * 과충방전, 열노출, 관통 안전성 평가 1. 1Ah급 파우치형 10개 · 배터리모듈(신규 및 사용후배터리) 시험평가 * 시제품제작과 연계지원 불가능 * 충방전, 전기화학평가 - 전기차 배터리 모듈 평가 최대 2개 · 시험결과에 대한 3자 인증 성적서로 가능 * 공인효력 없음 | 2건 |

* 각 프로그램은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

* 시제품 제작시 드는 소재비용은 업체 별도 부담

4. 신청방법

- 지원프로그램별 사전협의를 위한 신청서 초안 이메일 제출

| 지원기관 | 담당자명 (직위) | 전화번호 | 이메일 | 주소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울산테크노파크 | 권대현 (연구원) | 052-219-0944 | daehyunkwon@utp.or.kr |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16, 이차전지종합기술센터 |

- 담당자와 사전 협의 완료 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(platform.utp.or.kr)을 통해 전체 서류 제출
 - *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이며, 사이트 내 매뉴얼 참고

5. 제출서류

| 제출서류 | | 제출여부 |
|---|----|------|
| ① 신청서 | 원본 | 필수 |
| ② 세부계획서 | 원본 | |
| ③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| 원본 | |
|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| 원본 | |
|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| 원본 | |
| ⑥ 사업자등록증(원본대조필 날인 요망) *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울산지역 내 기업 확인으로 선정 가산점 | 사본 | |
| ⑦ 최근 3년간('20-'22) 재무제표(원본대조필 날인 요망) * 재무제표 미발행시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(가결산도 불가할 시 부가세납입증명을 회계사무소 날인 후 제출) | 사본 | |
| ⑧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제출기한내) | 사본 | |
| ⑨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 | 사본 | |
| ⑩ 기업역량 확인 가능한 서류(선정평가 시 활용) - 벤처기업지정서 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정서 - MAINBIZ/INNOBIZ 인증서 -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 등) 등록증 또는 출원증 - 국내외 표준인증서(시스템인증, 제품인증 등) | 사본 | 해당 시 |
| ⑪ 중소기업확인서 | | |

6. 선정평가

- **(평가방법)** 외부전문가(3~5인 내외)로 구성된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
- **(평가기준)** 제출서류 및 선정(대면)평가를 토대로 지원의 필요·적정성, 사업화 및 목표달성 가능성, 기대효과(매출, 고용 창출)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점수 60점 이상의 지원대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**(선정결과)**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 통보
※ 필요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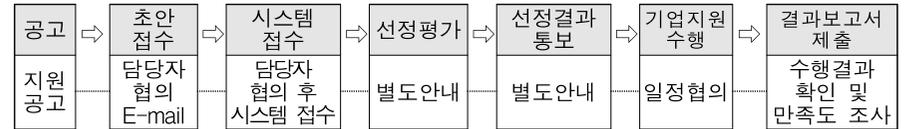
7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지원신청시 성과관리기관(5개년)동안 요청자료 성실 대응 필수

- 본 시제품제작(전극제조, 전지조립) 지원은 판매(상업) 목적 불가
-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 있음
-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

8. 추진일정

- 신청서접수 : 2023년 9월 8일(금) ~ 2023년 9월 21일(목) 18:00



※ 선정평가는 대면으로 진행하며 9월 3주차 진행 예정

9. 사전 지원 제외 대상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-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동일 사업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

10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(단, 협약기간 내 무협의를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
 -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 -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
 -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
| |
|--|
| 1.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적을 위조·변조·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|
| 2.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|
| 3.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적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|
| 4.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|
|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|
| 6.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|

-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-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

아니한 경우

-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
-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
-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

11. 관련 법령
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.
 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 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 -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 -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
 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 -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
 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
 -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

12. 문의처

| 지원기관 | 담당자명 (직위) | 전화번호 | 이메일 | 주소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울산테크노파크 | 권대현 (연구원) | 052-219-0944 | daehyunkwon@utp.or.kr |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16, 이차전지종합기술센터 |

붙임 1. 사업신청서 양식 1부. 끝.